

2017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기 공고(충청북도공고 제2017-270호,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5호)한 2017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선발예정인원,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등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2017년도 제1회,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기공고(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1호 2017.1.13.)된 내용에 따릅니다.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구분모집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계						515명(전국8)	171명		
제1회 임용시험						6명(전국6)	-		
제1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7급	수의	수의	일반	청주시1, 충주시1, 영동군1, 진천군1, 괴산군1, 단양군1 ※거주지제한 없음			
제2회 임용시험						36명	5명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도일괄1, 청주시14, 충주시1, 보은군2, 옥천군1, 영동군2, 진천군3, 괴산군3, 음성군4, 단양군2	제천시2, 증평군2, 단양군1		
					장애인	영동군1, 진천군1			
					저소득층	청주시1			
제3회 임용시험						74명(전국2)	-		
제3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소방사	일반소방		남성	도일괄31			
					여성	도일괄2			
	경력 경쟁	소방사	구급			남성	도일괄10		
						여성	도일괄2		
			구조				남성	도일괄25	
							여성	도일괄2	
	소방교	항공운항관리				남성	도일괄1 ※거주지제한 없음		
소방경						법무 (변호사)		성별제한없음	도일괄1 ※거주지제한 없음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구분모집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제4회 임용시험						331명	159명	
제4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호	일반	충주시2, 보은군1, 옥천군2, 영동군1, 진천군1, 괴산군2	제천시1	
			보건진료	보건진료	일반	충주시1	영동군1	
		9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일반	도일괄32, 청주시40, 충주시1, 보은군1 영동군1, 증평군1 진천군15, 괴산군14 단양군3	충주시18, 제천시15, 보은군6, 옥천군25, 영동군9, 증평군7, 진천군13, 단양군30
					장애인	장애인	도일괄5, 청주시5, 충주시2, 보은군2, 영동군1, 증평군2, 진천군1, 괴산군2, 단양군2	제천시1, 옥천군2
					저소득층	저소득층	도일괄2, 청주시2, 충주시1, 증평군1, 진천군2, 괴산군1, 단양군2	제천시1, 옥천군1 영동군1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도일괄1, 청주시2, 증평군1, 괴산군2	충주시4, 제천시2, 옥천군2, 단양군2
					세무	지방세	일반	충주시2, 제천시1, 보은군2, 옥천군1, 영동군1, 증평군1, 진천군2, 괴산군2, 음성군2
				장애인	증평군1			
		전산	전산	일반	도일괄1 영동군1, 증평군1			
		사서	사서	일반	충주시1, 단양군1			
				시간선택제	충주시2			
		공업	일반기계	일반	도일괄3, 청주시7			
				일반전기	증평군2, 괴산군1			
				일반화공	도일괄2			
				자원	도일괄1			
		농업	일반농업	일반	도일괄1, 청주시2, 보은군5, 옥천군2, 영동군1, 진천군1	제천시2		
			축산	일반	도일괄3, 청주시2, 보은군1, 영동군1, 증평군1, 진천군1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구분모집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녹지	산림자원	일반	도일괄2, 보은군2, 옥천군1, 영동군1, 증평군1, 진천군4, 괴산군2, 단양군2 제천시1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	도일괄4				
			보건	보건	일반	충주시2, 충주시2, 보은군4, 옥천군1, 증평군1, 진천군1, 괴산군1	제천시1			
						방역	일반	영동군1		
			식품위생	식품위생	일반	도일괄1				
			환경	일반환경	일반	충주시1, 증평군1 진천군1				
			시설	도시계획	일반	충주시1				
						일반토목	일반	도일괄10, 충주시7, 옥천군3, 영동군1, 증평군2, 진천군3, 괴산군2	충주시6, 단양군2	
					저소득층	충주시1				
				건축	일반	도일괄3, 충주시7, 옥천군2, 증평군1, 진천군6, 괴산군2	충주시4, 제천시2			
				지적	일반	충주시2, 보은군1, 옥천군2, 진천군1, 괴산군1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반	도일괄2, 제천시1, 증평군1, 음성군1 영동군1				
			방송통신	통신기술	일반	옥천군1, 증평군1, 진천군1				
						전자통신기술	일반	도일괄2		
			경력경쟁	9급	의료기술	의료기	물리치료사	일반	괴산군1	충주시1
						기술	방사선사	일반	보은군1, 진천군1 괴산군1	
						임상병리사	일반	진천군1		
				연구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일반	도일괄3		
환경연구	환경	일반			도일괄1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구분모집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제5회 임용시험						41명	1명
제5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7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도일괄5, 청주시4, 충주시1	제천시1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기계	실업계고	충주시1	
			농업	일반농업	실업계고	충주시1	
				축산	실업계고	괴산군1	
	시설	일반토목	실업계고	도일괄1, 충주시1			
	연구사	9급	학예연구	학예일반	일반	충주시1, 충주시1	
			농업연구	작물	일반	도일괄3	
				농업경영	일반	도일괄1	
	지도사	9급	농촌지도	농업	일반	충주시2, 충주시2, 제천시4, 옥천군1, 진천군2, 괴산군2, 음성군2, 단양군1	
				원예	일반	도일괄2	
				축산	일반	도일괄1	
				농촌생활	일반	도일괄1	
	제6회 임용시험						27명
제6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일반	도일괄4 ※가축사양,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	
			운전	운전	일반	도일괄5	제천시1, 보은군1, 영동군2, 단양군2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기계	일반	도일괄2, 옥천군1	
				농업기계	일반	증평군1	
				일반전기	일반	도일괄1, 청주시4, 옥천군1	
			해양수산	일반선박	일반	옥천군1	
			환경	일반환경	일반	옥천군1, 영동군1	
			시설관리	시설관리	일반	도일괄1 ※가축사양,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	
	운전 ※제1종운전면허 (대형면허)와 지정된 자격 면허증, 경력	운전	굴삭기	일반	도일괄2, 증평군1		
			트레일러	일반	도일괄1		

※비 고

-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모집에서 충원합니다. 단, 해당 직류의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임용예정기관 중 “도일괄”이란 미리 임용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선발하는 것으로 최종 합격자는 시·군 또는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결원사정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배분, 추천하여 해당기관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 3)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공무원은 1일 4시간(예를 들면 : 오전, 오후)근무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하되, 임용후보자의 희망 의견을 수렴, 협의조정(성적순 등)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 4) 실업계고 구분모집은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5) 원서접수 시 “시험명-종류-계급-직렬(직류)-구분모집-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에서 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게 되며 이것이 모집단위가 됩니다.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 6) 최종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 7)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임용시험’이라 표기했습니다.

2. 시험과목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1회 임용시험					
제1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7급	수의	수의	필기시험 없음
제2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제3회 임용시험					
제3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소방사	일반소방 (남,여)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 경쟁	소방사	구급 (남,여)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조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급상황관리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	항공운항관리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경	법무(변호사)	필기시험 없음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4회 임용시험							
제4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	지방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사서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중 2과목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농업	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반수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방역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식품위생	식품위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도시계획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전자통신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경력 경쟁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연구사	보건연구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5회 임용시험						
제5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7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력 경쟁	9급 (실업계고)	공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	일반농업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축산	축산, 가축사양, 초지	
			시설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문화재관리학	
			농업연구	작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원예	재배학, 원예학, 작물생리학	
	축산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제6회 임용시험					
	제6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국어, 한국사, 사회
운전				운전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물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해양수산	일반선박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환경	일반환경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시설관리	시설관리	한국사, 사회		
운전		운전 (굴삭기, 트레일러)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비 고

- 1)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 2) 시험시간 : 각 과목별 20분(1문항당 1분)입니다.
- 3) 2013년부터 시험관계법령에 의해 9급·소방사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 10」,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및 「별표 7」 참조)
- 4) 인사혁신처 및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가 가능한 시험과목은 위탁 출제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로 설정한 시험과목만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앙소방학교나 충청북도에서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로 가져가거나 응시표 등에 이기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시험과목은 **고딕체**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시험명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5차 시험
제1회 임용시험	수의7급	필기시험 없음		서류전형	-	면접시험
제2회 임용시험 제4회 임용시험 제5회 임용시험 제6회 임용시험	6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	-
제3회 임용시험	소방사·교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소방경 (법무분야, 변호사)	필기시험 없음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시험

※비 고

-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인·적성검사를 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2)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합니다.
- 3) 제3회 임용시험 중 소방경(법무분야, 변호사)는 원서접수 후 2017. 3. 31.까지 증빙서류를 제출(도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제출 및 접수방법은 붙임 “법무분야 증빙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하며,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경력 경쟁임용시험과 소방공무원(공개경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니다.
- 5)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 시험관계법규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단, 소방공무원 소방경(법무분야, 변호사)은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 성적(100퍼센트 적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4. 응시자격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1) '1.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515명(전국8)	171명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단, 수의7급, 소방공무원(항공운항관리분야, 법무분야)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전국 응시 가능) 그리고 실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은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8.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거주기간)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라)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소방사(공개경쟁)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1999.12.31.
소방사·교·장(경력경쟁)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1997.12.31.
소방경(경력경쟁)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1994.12.31.

- ※1)실업계고 구분모집은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0년 1~2월생)도 응시 가능
- 2)소방공무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한 제대군인 및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전역·소집해제·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포함)은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자격·면허증,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제1회 임용시험					
제1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7급	수의	수의	수의사면허
제2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제3회 임용시험					
제3회 임용시험	소방공무원 공통 응시자격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단, 소방경(법무분야, 변호사)은 제외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중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중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 경쟁	소방사	일반소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경력 경쟁	소방사	구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구급분야(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인정범위 : 붙임
			구조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특수부대 - 특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 등 공적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구급상황관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분야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응급구조사 1급 또는 의사,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소방교	항공운항관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항관리 또는 항공관제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소방경	법무 (변호사)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4회 임용시험					
제4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준사서, 2급정사서, 1급정사서
			시설	지적	산업기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경력경쟁	9급	의료기술	의료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연구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제5회 임용시험					
제5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 (실업계고)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농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축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원예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축산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제6회 임용시험					
제6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면허)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기계	산업기사(에너지관리), 기사(에너지관리), 기능장(에너지관리)
				농업기계	농기계정비기능사 소지자로 농기계정비기능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일반전기	산업기사(전기), 기사(전기), 기능장(전기)
		해양수산	일반선박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환경	일반환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조경기능사 소지자로 조경기능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조경산업기사·기사·기술사 소지자	
		운전	운전	굴삭기	제1종운전면허(대형면허)와 굴삭기운전기능사 소지자로 굴삭기운전기능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트레일러	제1종운전면허(대형면허)와 제1종운전면허(특수면허:대형견인차(舊트레일러))				

※비 고

- 1) 자격·면허증,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은 구분모집(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실업계고)도 포함되며 운전9급, 의료기술9급의 경우 임용예정기관별 자격·면허증이 구분됩니다.
-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3) 자격·면허증,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4)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 5)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2017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 학과 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6)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2017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7)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동일학과증명서)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농업 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도내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람만 응시 할 수 있으며, 2017. 1. 1. 현재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재학 사실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임용 중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자’항목 참조

9)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합니다.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의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자격증 또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수행한 업무를 말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고의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동일학과증명서) 및 실업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서, 경력증명서 서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채용)에 있습니다.

마. 소방공무원의 신체조건 : 붙임

소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별표 5와 같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체력검사 시 도핑테스트(붙임 안내문 참조)를 할 예정이며 도핑테스트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의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구분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구분모집에도 응시자격이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으로 1일 4시간(예를 들면 : 오전, 오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하되, 임용후보자의 희망의견을 수렴, 협의조정(성적순 등)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 2) 보수, 승진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자. 실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7년 1월 1일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를 말하며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직류와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으며,
- 3) 해당 학교장 명의로 추천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2017. 4. 28.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추천기한 및 절차는 붙임 '실업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요령 등'을 참조 바랍니다.

- 4)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됩니다.
- 5)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대학 재학·휴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고의로 판단 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6)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실업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요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 타

- 1)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단, 소방공무원은 남·여 구분 모집)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수의7급)	'17.2.1.~2.3. (17.2.8.)	-	필기시험		2.10.까지 증빙서류제출	2.16.	
			면접시험	2.16.	2.21.~2.23.	2.28.	
제2회 (사회복지9급)	'17.2.20.~2.22. (17.2.27.)	'17.4.8. ~4.12.	필기시험	2.28.	4.8.	5.9.	
			면접시험	5.9.	5.29.~5.31.	6.22.	
제3회 (소방공무원)	'17.3.20.~3.22. (17.3.27.)	'17.4.8. ~4.12.	소 방 직	필기시험	3.30.	4.8.	5.17.
				체력시험	5.17.	5.24. ~ 5.26.	6.23.
				신체검사	6.23.	6.26. ~ 6.28.	6.30.
				면접시험	6.30.	7.10. ~ 7.12.	7.19.
제4회 (8급, 9급 등)	'17.4.19.~4.21. (17.4.26.)	'17.6.17. ~6.21.	필기시험	5. 18.	6. 17.	7. 28.	
			면접시험	7. 28.	8. 16.~8.29.	9.29.	
제5회 (7급 등)	'17.7.18.~7.20. (17.7.25.)	'17.9.23 ~9.27.	필기시험	8.24.	9.23.	11.17.	
			면접시험	11.17.	11.28.~11.30.	12.15.	
제6회 (9급)	'17.8.2.~8.4. (17.8.9.)	'17.10.28. ~11.1.	필기시험	9.28.	10.28.	11.24.	
			면접시험	11.24.	12.5.~12.7.	12.22.	

-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 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2)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정한 기간 내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원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
-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 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5) 제3회 임용시험 “법무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2017. 3. 31.까지 붙임 “법무분야 증빙 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 등”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017. 6. 23.(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1522-0660)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의 「시험채용」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배너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8급,9급,소방사,소방교 : 5,000원, 7급,연구사,지도사, 소방경 :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됩니다.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3)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에)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공휴일·토요일에는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응급수수료 환급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붙임 ‘응시수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43-220-2532, 2534, 2536)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14년부터 응시자의 가산점 등록 및 관련기관 조회·확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항목 참고

2)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에도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4.5cm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취소·접수하는 것으로 가능
- 4)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마감일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5)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으로 원서접수센터의 개인 정보가 폐기되므로 응시원서 등은 수험생 개인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6) 우리 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7) 장애인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고하시고 원서접수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반드시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은 인사혁신처의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형편상 자체출제 직렬은 확대 시험문제지 및 OMR답안지만 제공합니다.)
 -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확인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 → 소정의 기간(원서접수기간 포함 5일 이내) 내에 증빙서류 제출(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공지
-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적용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소방공무원 제외)
 -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나.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의 적용은 전일제 기준으로 직위개념으로 적용(전일제 1명=시간선택제 2명)되며 관계법규에 의해 산정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모집단위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단,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 10%)를 가산하되,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포함)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자격증	등급	가산비율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 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 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 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 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가)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 등에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이 국가 기술자격에서 제외(폐지)됨에 따라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가)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직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류)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 (사회복지)	보건(보건)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임상심리사(1·2급)

나)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 의4를 참조)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소방공무원(소방사)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산 특전은 “붙임”과 같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됩니다.
- 2)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필기시험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시험시간 중 휴대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사.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 채용」란에 게시합니다.
- 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이 되지 않는 시험 과목에 한하여 충청북도에서 출제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사항

출제기관	내 용
인사혁신처 중앙소방학교	- 일반직 : 인사혁신처에서 출제가능한 시험과목 - 소방공무원 : 중앙소방학교에서 출제가능한 시험과목

※ 충청북도 자체출제 : 인사혁신처,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2) 시험과목별 문제출제기관 : “2. 시험과목”항목 참조

3) 중앙소방학교(소방공무원 전과목) 및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 예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권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 예정)

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 2534, 2536)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임용시험 중 학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